

【 2015.08.06(목) 강원일보 】

김정삼 행정부지사 ‘아름다운 용퇴’

강원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로 이동 후임에 배진환 정책관
손창환 도로철도과장 동계올림픽조직위 시설국장 내정

김정삼 행정부지사가 빠르면 오는 17일께 명예퇴임한다. 김 부지사는 오는 10월께 공모를 통해 강원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합석근 현 상임이사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김 부지사는 강원인재육성재단이 운영하는 강원학사 출신이다. 아직 청년이 4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위해 용퇴를 결심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도 국장급이 주로 가던 재단 상임이사를 결심하게 된 것은 강원학사

출신으로서 평소 품고 있던 강원인재 육성에 대한 남다른 의지로 해석된다.

김 부지사 후임에는 도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원주 출신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이 내정됐다.

오는 22일 임기가 끝나는 박용훈 도체육회사무처장 후임에는 최종훈 경제진흥국장이 내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본청 과장급의 승진과 이만희 원주부시장(3급)의 복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 인사교류 차원에서 내려간 이 부시장의 파견기간은 지난달

로 1년을 넘겼다. 하지만 청내 일각에선 사기 진작과 인사적체를 고려해 본청 과장을 승진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올해 말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과 조규석 재난안전실장, 이낙종 감사관, 허남석 강원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장의 공로연수로 국장급 인사요인이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인사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공석인 2018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시설국장은 손창환 도로철도과장이 승진, 내정된 상태다. 후임에는 이희주 농업기반과장과 이규운 동계올림픽본부 시설1과장, 김명식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부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성현기자 sunny@

“강원도에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을 겁니다”

“강원도에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5일 오전 철원에서 열린 경원선 복원공사 기공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열차에서 내려 백마고지역으로 도보로 이동하는 길에 최문순 지사에게 이같이 말했다. 최 지사가 “강원도는 철도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라고 설명한 데 따른 화답이다.

짧은 답변이었지만 다음 달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 조사(B/C) 중간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도상황에서는 울림이 큰 문장이었다. 평소 신의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박 대

통령의 스타일상 결코 의례적인 말은 아니라는 것이 도의 해석이다.

동서고속철은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처음 나온 뒤 ‘30년 단기 공약’이 됐다. 이후 2001년, 2010년, 2012년 등 3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 유례없이 네 번째 조사에 착수하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사실상 사업 추진은 힘들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동서고속철을 강원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예비조사를 주관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4일 도 국회의원 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사업추진 의지

를 밝힌 것과 맞물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당시 “동서고속화철도는 현재까지 경제성이 조금 낮게 나오고 있다. 어떻게든 이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대안노선·용역 결과 B/C 가 0.97로 경제성이 높게 나왔다”면서 “정부의 유리자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는 핵심 철도망인데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 2015.08.06(목) 건설경제 】

아하! 그렇구나

공사도급계약의 성립 여부

Q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 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건설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99조 제2호).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에 처한다(제30조 제1항 제1호). 그렇다면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가?

A 공사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어떤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64조). 도급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

하면 성립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의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도급인의 의사표시와 그 보수의 대가로 어느 일을 완성하겠다는 수급인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즉시 계약은 성립한다.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따르지만, 계약서의 작성 여부는 도급계약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심지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05. 24. 선고 2012다112138 판결).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